

도로굴착·복구 허가조건

1. 굴착허가 기간 내에 시공치 않을 경우 허가는 자동무효가 되며, 허가기간 이외의 굴착은 불법굴착으로 인정합니다.
2. 먼지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굴착토사는 현장에서의 즉시 반출 및 복구 후 인접 포장면에 부착된 토사는 물청소 실시로 제거하고, 굴착·복구는 당일 작업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사특성상 당일굴착·당일복구가 안 되는 사업구간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3. 도로시설물인 측구, 보차도경계블럭(석), 가드레일, 가로등 및 가로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고, 하수구가 메워지는 일이 없도록 가마니·모래주머니 등으로 보호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주변에 자재, 토사, 오수 등의 잔재방치를 금지하며 항상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주위를 청결히 정비하여야 합니다.
- 4의1.공사기간 중에는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4조 등에 의거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 시 첨부·제출하여야 하고, 교통처리대책에 대하여는 동작경찰서와 협의한 후 공사 시행하며,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시행자(원인자)가 져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안내판, 안전펜스 및 야간조명(75럭스 이상)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내간판 설치는 교통안내표지판 제작설치 및 관리요령에 따라 규정대로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시행청, 시공자, 공사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 4의2. 보도공사를 시행하는 공사구간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임시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임시보행로 시설 및 보행 안내간판 설치, 안전시설 설치 및 자재정리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5.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내용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 5일전까지 착공계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공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됩니다.
6. 비포장 구간은 추후 포장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1m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합니다. 단, 이의 불이행으로 지장 및 손상이 있을 시는 매설자 자체부담으로 이전 또는 재매설하여야 합니다.
7. 보도공사시 현장 여건상 당일에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주변과의 단차없이 평탄성 확보 후 가복구하고, 고무판 또는 동일기능을 가진 상위 재질(단, 부직포는 사용금지)로 덮어 보행통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복구 구간에는 복구완료 예정기간을 명기하여 가복구 완료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임시포장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8. 복구공사 준공검사 시에는 우리구청이 지정하는 도로굴착복구 감리원으로 하여금 입회토록 하고, 입회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합니다.
9.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지하시설물 종합도를 참조하여 시행하되,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3]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 전에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조치사항을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배수설비(가정하수관) 설치 및 개량 시에는 공공하수도 연결부의 수밀성 확보를 위해 천공기 및 단지관(새들 포함) 사용을 하여야 하며, 준공 시 연결부 시공 전·중·후 사진 및 도로복구 완료사진(표층·중층·기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도로굴착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선, 문자, 기호 등)이 제거 훼손되었을 경우 도로복구 완료 후 3일 이내 교통안전시설을 복구 조치하고, 준공서류 제출 시 사진을 전·중·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3]을, 도로일시점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13.부실시공 및 조건 미 이행 시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5,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 준수사항

1.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발생토사는 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고 반드시 모래로 환토한 후 물다짐을 시행해야 합니다.
2. 포장도로 굴착·복구 시에는 커터기를 사용 선형이 직선으로 유지되도록 포장층을 완전히 절단하여 기존포장에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다른 지하매설물을 횡단할 경우에는 맨홀을 양측에 설치하고 지하관로는 지상에서 2m이하로 매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기관에 통지·협의하여 담당자의 입회하에 다른 지하매설물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만약 지장이 야기될 경우에는 굴착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4. 다른 기관의 지하매설물의 보호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지하매설물 인근 굴착시 관련기관에 사전 협의 및 담당자 입회하에 굴착해야 합니다.
5.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다량배출자 신고)규정에 따라 공사시행 전 일반폐기물(건축물 폐재류)다량배출자는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우리구청(청소행정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굴착토 반출시 분진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해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 먼지의 규제)에 따라 착공전에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동작구청 환경과)
 - 가. 신고대상 사업
 - 1) 건설업(굴착공사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m³ 이상)
 - 2) 토사운송업(골재채취장, 굴착공사장, 토목공사장)
7. 복구완료 후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계속 도로점용허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동작구청 건설관리과)
8. 공사용 과적 차량통행으로 하수관의 침하, 맨홀 및 빗물받이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해야 하며, 또한 공사장에서 사용한 레미콘 잔량을 하수도 관내에 투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9. 도로굴착·복구 허가사항은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별표 3]에 의거 주민이 보기 쉬운 곳에 내걸어야 하고, 공사장 주변 가설울타리는 포장면과 밀착시켜 차선과 평행이 되도록 설치하고 퇴색된 것은 선명하게 도색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굴착공사로 생기는 모든 사고는 신청자(사업시행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맨홀설치 시 급결제를 사용하여 양생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노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자재적치로 보도를 완전 차단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사장 주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1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중 부득이 허가(승인)면적을 초과하여 점용(굴착)한 경우에는 사전 우리구청(도로관리과)에 협의 승인을 득할 것이며, 또한 도로의 점용이 완료된 경우 「도로법」에 따른 원상회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 이행 시는 「도로법」 제117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본 조건을 위반할 경우 승인을 취소, 중단, 중지 등 명령처분을 할 수 있으며, 취소 시에는 신청자(수허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우리구청에서 복구하고 그 비용을 추징하고 관계 법규에 따라 조치합니다.
13. 도로굴착·복구 공사를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등을 확인하기 바라며, 아울러 공공교통상의 효용이 현저한 사유토지가 포함된 도로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는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점용사항만을 허가하는 사항임을 명심하고, 각종 지하매설물 설치 시에는 토지주와 소유권 분쟁 및 원상회복,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 될 수 있으니, 해당 토지주 및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별도 협의하기 바라며, 이에 따른 민사사항은 굴착원인자 및 지하매설물 설치자 등의 부담으로 이설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14. 공공교통상의 효용이 현저한 사유도로에 대한 굴착공사시 토지소유주 또는 지하매설물 설치 및 관리기관, 인근주민과 협의를 마친 후 시행하고, 복구공사는 이용하는 주민의 통행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15. 굴착공사 시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지하매설물 또는 도로시설물을 손괴하는 사고를 발생시키는 자는 일정기간 서울시 도로를 굴착하는 공사에는 참여할 수 없

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를 유보 또는 제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합니다)하며, 관련법에 의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외에 사고 사안별로 “굴착허가(수허가자)제한 및 시공사 제재 기준”에 따라 조치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16. 지하매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실명제 실시에 따른 공사준공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복구공사 준공계를 제출(공사완료 후 20일 이내)할 때 감독관이 입회한 검측확인 현장사진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사준공표지판 규격 : 10×15cm[소형관거(Φ300mm미만)에는 소형 준공표지판(10×7cm)활용]

※ 준공표지판 실명내용, 공사명, 개요, 위치, 시행청(감독자, 감리자), 시공사(소장, 분야별 책임기능공) 기록

17. 공사시행 전 주민편의 안전공사 시행 홍보를 사전에 실시하고, 공사시행 시에도 도로굴착공사 시행의 불가피성, 공사기간, 시행부서 등 공사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간판, 플래카드, 우회도로, 교통통제수 등을 충분히 배치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18. 동절기 도로굴착통제 기간(금년 12. 1 ~ 익년 2. 28)에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19. 동절기공사 기준 준수 : 평균기온이 영상 5°C 이상 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부직포, 비닐 등으로 보온·양생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0. 당일굴착 지역은 당일복구하고, 야간공사는 익일 06시까지 모든 복구가 완료되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도로굴착 후 포장복구 시 100% 환토 및 다짐철저로 침하발생을 억제하여야 합니다.

21.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은 납부고지서에 의거 기한 내에 선납부하고, 영수증사본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3조에 의거 당해 굴착 및 복구공사 착공 5일 전에 착공계(일일작업공정표, 교통처리계획서, 지하매설물 안전관리대책 협의서 등)를 우리구청에 제출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을 교부받아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22.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굴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도로법 제114조제2항, 제6항)
- 23.본 허가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본 공사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할 것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승인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24.도로굴착 후 아스팔트포장 시 도로바닥면 각종 표지시설을 경찰서와 협의하여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또한 지적측량기준점이 망실·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망실한 경우에는 공사착공 전 지적측량기준점의 이전·재설치 또는 보수 등에 관하여 관리부서(동작구청 지적과)와 협의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25.배수설비(가정하수관) 설치 및 개량 시에는 『하수도 연결관 접합상태 개선방안』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시에는 관리부서(동작구청 안전치수과)와 별도 협의를 득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26.지하시설물(도시가스, 지하철, 고압전류, 대형상수도, 통신선로 등)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전담직원 입회하에 굴착공사를 시행하고, 지하시설물 위치가 불확실한 곳은 인력굴착을 하여 매설물을 확인 후 굴착 작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27.안전조치 불이행시 조치 - 안전에 영향이 미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굴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28.보도공사 전에는 시민보행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통로를 확보하되, 교육 이수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보행통로 10m 이상일 때), 보행통로 가시설 및 보행 안내 간판 설치, 공사구간 안전시설 설치 및 자재정리 등 공사구간에 대한 사전 안전 조치 후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 사전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음
- 29.연장 100m이상 전폭 보도정비 시에는 공사구간의 시·종점에 천연 석재 등 마모 및 오염이 적은 재료 (규격 : 가로 60cm×세로 60cm)를 사용하여 공사명·공사구간·공사기간·시공사·감독자 등이 기재된 공사실명제판을 설치하여야 함(보도공사 실명제)
- 30.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예정일이 동절기(12월 1일~다음해 2월 28일)일 경우, 11월

말까지 도로(보도 포함) 정비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10월 말까지 우리구 (도로관리과)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보도공사 Closing 11)

※ 『보도공사 Closing 11』 : 소규모 긴급굴착 공사 이외의 모든 보도공사는 11월 말까지 완료하여야 하고 동절기(12월 1일~다음해 2월 28일)에는 보도공사 금지

31.보도공사시 부실공사로 전면 재시공이 필요하게 될 경우, 시공사와 공사관련자(현장대리인, 감리자, 기능공 포함)는 일정기간 공사참여 제한 처분을 받게 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지하시설물도(GIS지도) 굴착복구 활용 시행

- 지하시설물 종합평면도를 참조하되,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사 전에 유관 기관과의 협의 및 관로의 매설위치를 나타내는 맨홀, 표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 시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노출된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지하시설물 종합평면도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 시 지도를 수정하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일반지하매설물공사 제외)

도로의 점용허가 게시사항(제26조제4항 관련)

1. 도로의 종류
2. 노선명
3. 점용목적
4. 점용의 장소와 면적
5. 점용의 기간
6.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7. 공사실시방법
8. 공사시행기간
9. 도로의 복구방법
10. 허가기관
11. 허가연월일
12. 점용자의 주소·성명
13. 불편신고전화(○○○-○○○○)
14. 그 밖의 사항

년 월 일

게 시 자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1.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커터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도로굴착·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복구공사가 단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도로굴착·복구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도로굴착·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 지침(국토해양부) 및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서울특별시)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